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8년 12월호

###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

### 2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KSM 운영기준

나. 유가증권 공시규정 시행세칙

##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(2018/11/22 제정·시행)

#### 1) 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
  -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, 공개수준을 보다 강화

#### 2) 주요 내용

- 세부 공시기준(4조, 별표 1)
  -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, 기관운영,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, 대내외평가 등을 공시
    -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되, 추후 해당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공시
- 경영공시 매뉴얼(5조)
  -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에서 규정
- 자료 공시의 시점(6조)
  -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(매년, 매 반기 또는 매 분기)에 따라 일괄 공시
  -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·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
- 공시의 예외(7조)
  - 금융감독원장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에 대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
- 공시자료의 품질관리(8조~10조)
  -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 관리
    - 공시 세부 항목별로 작성자, 감독자,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
    -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는 등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·검증할 수 있음

## □ 불성실 공시 벌점 부과(11조, 12조, 별표 2)

- 공시 불이행, 허위공시, 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규정
-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

## □ 불성실 공시 사후조치(13조 별지 1호)

- 금융감독원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,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
-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음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- 2. 한국거래소 규정
  - 가. KSM 운영기준
  - 나. 유가증권 공시규정 시행세칙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KSM 운영기준 (2018/11/6 개정·2018/11/12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제4차 산업 등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KSM 등록확대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KSM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
  - KSM에 등록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
  - KSM 시스템 이용료 면제기간의 추가연장을 통하여 참가자 비용부담 경감

#### KSM의 개념

- ▷ KSM(KRX Startup Market)은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의미(KSM 운영기준 1조)
- ▷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펀딩 성공기업은 별도 조건 없이 KSM 등록이 가능하며, 투자자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분거래가 가능

#### 2) 주요 내용

- KSM 추천기관에 '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'을 추가(2조 1항 5호 파목)
  -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 지원 사업 전담수행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신규로 지정
    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우수기술 및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스타트업 R&D 예산 지원 기관
- KSM 참여회원의 시스템 이용료 면제기간 연장(부칙 3조)
  - KSM 시스템 이용료 면제적용 시한을 추가 3년 연장
    - (기존) 2018년 11월 14일 → (개정) 2021년 11월 14일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KSM 시스템 이용료 관련 규정

제18조(KSM 시스템 이용료) 회원은 매월 1백만원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KSM 시스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나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18/11/30 개정·2018/12/4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제재의 합리성과 공시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법인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
  - 매매 거래정지 대상 및 제재심의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
  - 수시공시 의무 항목의 정정공시 예외와 관련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편

#### 2) 주요 내용

- 불성실공시 제재의 효율적 정비
  - 매매거래정지 기준 조정(16조 2항)
    -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부과별점 5점 미만에서 10점 미만으로 상향
  -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 정비(별표 2 등)
    - 제재심의기준 중 위반의 동기 각 항목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항목별 정의를 구체화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 및 정합성을 제고
    - (기존) 고의, 중과실, 과실, 단순착오 → (개정) 고의, 중대한 과실, 통상의 과실, 경미한 과실

#### 위반의 동기

- ▷ 고의 :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거나,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등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해 의도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
- ▷ 중대한 과실 :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관련된 사실 관계를 통해 위반행위의 의도성을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
- ▷ 통상의 과실 :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
- ▷ 경미한 과실 :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, 위반행위의 목적·동기·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— 제재심외기준 중 부과별점의 가중·감경 범위를 확대

- (기존)  $\pm 2$ 점 범위 → (개정)  $\pm 4$ 점 범위
- 최대별점은 14점, 최저별점은 0점

□ 수시공시 의무 항목(단일판매·공급계약 체결)의 정정공시 예외 관련 사항에 대한 합리적 개편

—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기준 개선(18조의3)

- 단일판매·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
- (기존)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 이내에서 변경 → (개정)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(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) 이내에서 변경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